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1070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107029 판결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소22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상현

변론종결 2022. 10. 13.

판결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소22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1. 9. 1.'은 위 '2015. 9. 1.'의 오키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중순경 피고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2015. 8. 5.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8. 공범 D, E과 함께 C를 통한 F 메신저 사업 및 G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298호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478 사건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 2년 9월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C를 통해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인 F를 개발하고, G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원고가 투자하면 C의 지분 2%를 주고 사내이사로 등재해주며 이익금의 2%를 주겠다.'고 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적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계약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위 투자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등 참조),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인정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C를 통해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인 F를 개발하고, G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 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원고에게 C 이익금의 2%를 주고, 사내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고 말하였고, 실제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재시켜주고, C 발행 주식 1.5%인 15,000주를 주었으므로 원고를 기망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취소권 행사 가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6. 9.경 피고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C를 포함하여 피고가 설립한 법인들이 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2021. 9. 2.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2016. 9. 무렵 피고가 진행한 F 앱 개발사업 및 G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여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7. 11. 10.에는 기망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권을 행사하였는바, 원고의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신미진, 판사 박미영